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행정지원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5년 4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 및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회 인력 운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직급을 조정(별정직6급 → 일반임기제6급)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 변경(안 제4조 관련 별표 3)

○ 일반직 계 : 1,582명 → 1,583명 (+1명)

- 6급 이하 : 1,502명 → 1,503명 (+1명)

○ 별정직 계 : 9명(본청 5명, 구의회사무국 4명) → 8명(본청 5명, 구의회사무국 3명) (△1명)

- 6급상당 이하 : 8명(본청 4명, 구의회사무국 4명) → 7명(본청 4명, 구의회사무국 3명) (△1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 3. 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나. 예산조치 : 기준인건비 범위 내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결과

- 기 간 : 2025. 3. 20. ~ 2025. 3. 23.
- 방 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- 결 과 : 별도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3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대상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대상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대상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대상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592	1,592			
정무직	1	1	0	0	0
일반직 계	1,583	1,583			
3급	1	1	0	0	0
4급	8	6	1	1	0
5급	69	33	2	14	20
6급 이하	1,503	1,503			
전문경력관	2	2			
별정직 계	8	5	3		
5급상당	1	1			
6급상당 이하	7	4	3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[별표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	[별표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592	1,592				총 계	1,592	1,592			
정무직	1	1	0	0	0	정무직	1	1	0	0	0
일반직 계	1,582	1,582				일반직 계	1,583	1,583			
3급	1	1	0	0	0	3급	1	1	0	0	0
4급	8	6	1	1	0	4급	8	6	1	1	0
5급	69	33	2	14	20	5급	69	33	2	14	20
6급 이하	1,502	1,502				6급 이하	1,503	1,503			
전문경력관	2	2				전문경력관	2	2			
별정직 계	9	5	4			별정직 계	8	5	3		
5급상당	1	1				5급상당	1	1			
6급상당 이하	8	4	4			6급상당 이하	7	4	3		

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의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변경(별정직6급 → 일반임기제6급)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 차액 발생액은 없어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』 제11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의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변경(별정직6급 → 일반임기제6급)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 차액 발생액은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

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장 박정훈